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(경수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(경수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14일

발의자 : 강수진, 경수현, 김육영, 박영섭,
소형준, 양순임, 이호건, 임태근,
정기혁, 정병기, 정윤주, 정해숙

1. 제안이유

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, 홍보 및 인식개선(안 제4조~제6조)

라.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8. 20. ~ 2025. 8. 26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생존수영교육”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성북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

3.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
4.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
5.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6.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홍보 및 인식개선) 구청장은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성북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
2.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·배포
3. 그 밖에 수상안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위탁)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

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협력체계)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